

2-1-1 예수대학교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교육목적, 교육목표 및 인재상)

- ① 우리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문을 교수·연구하며 사회봉사를 통하여 기독교의 진리와 사랑을 인류사회에 실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우리대학교의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독인성을 함양한다.
 - 2.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융합 역량을 함양한다.
 - 3. 인간존중을 실천하는 보건복지 전문역량을 갖춘다.
- ③ 우리대학교의 인재상은 ‘세상을 디자인하는 창의적 세움인재’로 구체적인 인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독인
 - 2.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융합인
 - 3. 보건복지를 선도하는 전문인

[전문개정 2023.9.6.]

제2조(명칭) 우리 대학교는 예수대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우리 대학교는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83에 둔다.<개정 2014.3.12>

제 2 장 편 제

제4조(조직) 우리 대학교에는 간호학부, 사회복지학부, 대학원 및 기타 부설기관을 둔다.

<개정 2004.10.18, 2006.9.13, 2011.9.9>

제5조(학생의정원) ① 학생의 정원은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0.18., 2005.6.13., 2006.9.13, 2011.3.1., 2011.9.9., 2018.3.21., 2021.11.11>

학부	개설전공	입학정원
간호학부	간호학	115명
1개 학부		115명

-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 3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6조(수업연한) 우리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제7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재입학한 자와 편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 ④ 총장이 인정하는 중증장애학생, 치료를 받으면서 학업을 수행해야 하는 장애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별도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6.9.>

제 4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제 1학기와 제 2학기로 나눈다.

② 제 1항의 일반학기 외에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중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계절 학기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3.2.6.>

제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단, 실습 등 기간을 단축하여 집중 이수하는 과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2.17.>

② 계절 학기를 두는 경우 1 계절학기의 수업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

③ 천재지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총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총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09.3.1>

제10조(교원의 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9.10.>

② 강사와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강사의 경우에는 매주 6시간 이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사의 경우는 매주 9시간,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9.10.>

제11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
2. 개교기념일(6월 1일)
3. 토요일

4. 일요일

5. 국정 공휴일

②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9.3.1>

③ 임시휴업 및 임시휴업 기간의 변경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 5 장 입학, 재·편입학 및 등록

제12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과 편입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신입학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제13조(입학자격)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 한다.

제14조(편입학) ①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라야 한다.

③ 편입학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의2(학사편입학)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제 3학년에 편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사편입학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1.]

제14조의3(의료인력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소지자편입학) ①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가 제 4학년에 편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소지자편입학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12.]

제15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입학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학칙 제29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제30조에 의해 퇴학한 자에게는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의 허가는 1회에 한한다.

제16조(입학지원 서류) ①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본교 소정의 입학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수험료를 첨부하여 총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최종 학교의 성적증명서

3.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4. 수험료

5.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서류

② 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험료는 대학입학전형관련 수입지출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규칙에 따라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14.3.12>

제17조(입학전형) ① 제 1학년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총장이 정하는 선발 방법에 의하여 선발한다.<개정 2014.3.12>

1. 대학 수학능력 시험

2.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3. 대학별 고사

4. 면접고사

5. <삭제 2014.3.12>

6. <삭제 2014.3.12>

② 기타 입학전형의 방법,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모집할 때마다 총장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제18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① 입학 전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09.3.1>

제20조(입학 허가자 구비서류 등)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고 입학금 납부 외에 우리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6.9.13>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의2(입학 허가의 취소)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21.2.26.]

제21조(보증인) ① 입학 구비서류에 필요한 보증인은 당해 학생의 부모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 중 학비 및 기타 신분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책

임을 질 능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2006.9.13>

② <삭제 2006.9.13>

제22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초 총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6 장 교내 전학과 전과<본장 신설 2004.12.17.><본장 삭제 2011.9.9.><본장 신설 2021.11.11>

제23조(전과의 시기 등) ① 제2학년 또는 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선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간호학부로의 전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② 교내 전과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학부 또는 모집단위의 통합·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모집단위를 옮기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다.
- ④ 전과를 허용하는 모집단위의 범위와 비율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절차)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관계 학부장의 승인서와 이미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5조(재학연한) 교내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제26조(과목이수) ① 교내 전과한 자는 기득학점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학전공(학부) 소정의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기득학점 중 당해학 전공(학부) 과목과 유사 공통되는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나머지는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7 장 휴학, 복학, 제적, 퇴학

제27조(휴학) ① 질병, 병역, 임신·출산·육아, 창업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일수 4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2016.4.6>

- ② 휴학의 증빙서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4.6>
- ③ 휴학기간은 1회에 두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편입학생의 휴학기간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연한의 2분의 1을 넘지 못 한다.
- ④ 병역, 임신·출산·육아, 창업의 사유로 승인된 휴학은 그 기간을 전항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9.5.><개정 2016.4.6., 2017.11.21>

⑤ <신설 2014.3.12><삭제 2016.4.6>

제28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해당학기의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③ 병역으로 인한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역증, 전역예정증명서 등 전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신설 2016.9.28>

제29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휴학기간 연장 신청 또는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9.9.10>
3. <삭제 2014.3.12>
4. <개정 2013.8.26><삭제 2014.3.12>
5. 타교에 입학한 자
6. <삭제 2019.9.10>
7.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총장이 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8.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9. 사망, 질병 등으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신설 2006.9.13>

제30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이 연서한 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8 장 교과와 이수

제31조(교육과정) ① 우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개정 2021.2.9., 2023.2.6>

②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2.9.><개정 2023.2.6>

제32조(교양과목) 교양과목의 종류와 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전공과목) 전공과목은 기초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으로 구분하되, 각각 그 종류와 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교직과정) 교원자격증을 얻고자하는 자는 교직과정을 따로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에 산입 한다.

제35조(학점) 교과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 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체육·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교과목은 30

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제36조(학점취득의 특례) ① 학생은 특별시험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특별시험으로 취득한 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편입생의 학점취득 특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3.1., 2023.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학점취득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의2(학점의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사항을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는 따로 정한다.<개정 2023.7.1.>

[본조신설 2023.2.6.]

제37조(부전공 및 나노디그리) ① 우리 대학교는 전공과정이외에 부전공과 나노디그리를 둔다.<개정 2016.4.6., 2024.5.8.>

② 부전공과정은 전공학부 교과목 이외의 특정 학부의 전공과목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간호학부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신설 2009.3.1.><개정 2016.4.6>

③ <신설 2016.4.6.><삭제 2019.2.26.>

④ 2016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주전공 이외에 부전공 또는 나노디그리 중 1개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직과정 이수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6.4.6.> <개정 2024.5.8.>

⑤ 부전공 및 나노디그리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4.6.> <개정 2024.5.8.>

제37조의2(마이크로디그리) ① 우리대학은 급변하는 사회 및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융복합 사고능력의 함양을 위한 마이크로디그리를 둈다.

②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2.6.]

제38조(수업시간표 및 수업방식) ① 매 주의 수업시간표는 매 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총장이 정한다.

② 수업은 학기 중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간수업, 계절수업, 현장실습 수업,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4.29.><개정 2021.2.9.>

③ 수업방식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0.4.29.>

제39조(학수번호) 각 교과목의 학수번호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한다.

② <삭제 2019.9.10>

③ 이수 결과 과락된 과목이 필수과목일 때에는 이를 재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

택과목일 때에는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41조(채플 및 사회봉사) ① 재학생은 반드시 채플에 참석해야 한다.<개정 2016.4.6>

② 채플 출석 상황이 불량한 학생은 각종 포상 및 장학금 지급과 기타 추천 대상에서 제한한다.<개정 2016.4.6.>

③ 재학생은 대학의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사회봉사 관련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그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0.4.29.>

[제목개정 2020.4.29.]

제 9 장 시험 및 성적평가<장명개정 2016.4.6>

제42조(시험) ① 시험은 매 학기의 중간과 학기말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이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임시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②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성적평가 및 관리규정에 따라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7.8.24>

제43조(출석의무) 한 학기 수업시간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4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단, 실험·실습·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로 D0 이상은 급제, F는 낙제로 한다.<개정 2003.9.23>

등급	평점
A+	4.5
A0	4.0
B+	3.5
B0	3.0
C+	2.5
C0	2.0
D+	1.5
D0	1.0
F	0

③ 성적 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이수 교과목의 실험실습 등에 있어서는 P(합격) 또는 F(불합격)로 성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P는 평점 계산에는 포함시키

지 아니하고 졸업학점에는 산입 한다.<개정 2011.9.9>

④ 성적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7조 제4항의 장애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방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0.6.9.>

제45조(학사경고) 성적 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추가시험) ① 학생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성적평가 및 관리규정에 따라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17.8.24>

② 추가시험은 시험기간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한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학점 인정) ① 급제로 인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소정 학점을 인정한다.

②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교과목이 개설·운영된 매 학기말로 한다. 단 현장실습 등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 교과목 개설학기 직전 방학 중 운영하고, 다음 학기말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1.2.9.><개정 2023.7.1>

제48조(학점의 취소) 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49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일반학기 취득학점은 최소 12학점 이상, 최대 21학점 이하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24학점까지 취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3.16., 2023.7.1.>

② <삭제 2004.3.16>

③ 계절학기에는 6학점까지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④ 학기말의 평균평점이 1.7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 다음 학기의 수강 학점 수를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03.9.23., 2018.11.28>

제50조(편입학생 학점인정) 편입학 학생에게는 전적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우리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 인정한다.

제51조(수강신청의 취소) 수강승인을 얻은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수강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한다.

제52조(졸업에 필요한 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아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6., 2018.11.28., 2019.1.30., 2020.4.29., 2024.5.8.>

1. 간호학부 : 주전공과정 학점과 부전공, 나노디그리, 교직과정 중 1개 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포함하여 13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학부 : 주전공과정 학점과 나노디그리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포함하여 13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동안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 영역별 이수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16.4.6>

제52조의2(졸업인증제 운영) ① 학생은 재학 중 졸업인증에 필요한 비교과 과정을 이수

하여야 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개정 2014.5.12., 개정 2021.2.26.>

② 학부에 따라 졸업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부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1.]

제53조(졸업) ① 이 학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서식 제1호)의 증서에 의하여 간호 학사학위, 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4.10.18, 2009.3.1>

② 졸업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그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제54조(졸업논문 등) ① 제 5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논문 제출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총장이 허락한 경우에는 졸업종합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4.6>

②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졸업의 요건) 졸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4년(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2.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개정 2016.4.6>
3. 채플에서 4개 학기 이상 "P"를 받은 자 (단, 편입학자는 2학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9.3.1><개정 2014.3.12>
4. 졸업논문(또는 졸업종합시험)에 통과된 자.
5. 졸업인증 기준을 통과한 자<신설 2014.5.12.>

제55조의2(학사학위취득 유예) ① 제55조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 1년 이내에서 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5.8.]

제56조(졸업의 취소) 졸업생으로서 제 48조에 해당되었을 때는 졸업 및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2.11>

제57조(진급)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하고 진급할 수 있는 조건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유급) ① 소정의 성적 미달자와 유급희망자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유급할 수 있다. 그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3.12>

② <삭제 2013.8.26>

제10장 학생활동

제59조(학생활동) 학생활동은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향상하기 위해 학생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활동을 말하며, 대학은 학생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6.>

제60조(학생자치기구) ① 본 대학교의 재학생은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학생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9.6.]

제61조 <삭제> 2023.9.6.>

제62조(학생지원위원회) ① 학생자치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학생지도를 위해 학생지원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9.6.]

제63조(학생활동 승인과 제한) ① 학생자치기구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학생 단체활동이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외부 인사의 교내 초청

②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과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반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9.6.]

제64조(학생생활지도) ① 학생의 학업, 신앙, 진로 및 취업 등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평생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개정 2014.3.12., 2016.4.6.>

② 교내부속기관은 통합적인 학생지원을 위하여 연계·협력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8.3.21.>

제64조의2(장애학생지원) 장애로 인하여 입학과 수학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종전 제65조의3이 제65조의2로 본조 신설하여 이동 <2023.9.6.>]

제65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학생지원위원회에서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16.4.6.>

제65조의2(사회봉사) <삭제 2020.4.29.>

제65조의3 <삭제 2023.9.6.>

제11장 포상과 징계

제66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67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자
- ② 징계는 해당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심의를 거쳐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68조(성희롱·성폭력예방) ① 우리 대학교 내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

제12장 납입금

제69조(납입금 납입의무) 학생은 매 학기 등록시에 수업료,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7조 제4항의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 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0.6.9.>

제70조(복학자의 납입금) ① 등록기간 만료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에게는 당해 휴학기간의 납입금을 면제한다.

② 당해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당해학기에 휴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복학 학기의 납입금으로 대체한다.<개정 2006.9.13>

제71조(납입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 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2.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기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적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 ② 제1항의 반환금액에 관한 사항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관계법령 제 6조에 따른다.

제13장 장학금

제72조(지급대상) 우리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중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06.9.13>

1. 가정사정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교육보호대상자

4. 교내 특정부서에 배치되어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학생 및 학생회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5.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3조(지급절차) 장학금을 지급 받을 학생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74조(지급 중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또는 회수한다.

제75조(세부사항) 장학금 지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장 특별과정

제76조(개설) 우리 대학교에는 특별과정(사회교육과정, 공개강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2016.4.6>

제77조(특별과정의 과목 등) 특별강좌의 과목, 기간, 장소, 수강자격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7조의 2(학점은행제) ① 총장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9.28>

② 제1항에 의한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9.28>

제15장 교무위원회

제78조(구성) ① 우리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각 처장 및 학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기 이외의 자를 참석케 할 수 있다.

제79조(소집)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80조(심의의결 정족수) 교무위원회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인원 3분 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81조(심의사항)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반학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학교예산, 결산 및 재정의 기본방침 시행에 관한 사항
3. 대학, 학과 및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4. 인사에 관한 기본방침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교직원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한 사항

제16장 교수회

제82조(구성) 학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및 각 학부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09.3.1, 2012.9.5>

- 제83조(소집)** ① 본 대학교 교수회는 총장이, 각 학부 교수회는 학부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3.1>
② 특별한 경우 교수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09.3.1>
③ 의장 부재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3.1>

제84조(심의의결 정족수) 교수회는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85조(심의사항) 교수회는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9.13, 2009.3.1>

1.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6.4.6>
2.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9.3.1>
4. 졸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6.4.6>
5.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6.4.6>
6.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16장의2 직원회<신설 2018.1.30.>

제85조의2(구성) 중요 행정 정책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직원회를 두며, 이사장 및 총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대학에 소속된 모든 직원과 조교로 구성한다.

- 제85조의3(소집)** ① 본 대학교 직원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직원회 소속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의장 부재 시에는 사무처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85조의4(의결정족수) 직원회는 재적 인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1/2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85조의5(심의사항) 직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 중요한 대학 행정 정책에 관한 사항
2. 대학 직제 개편 및 행정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3. 대학평의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4.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장의3 대학평의원회<신설 2018.1.30>

제85조의6(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의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한다.

제85조의7(평의원회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동문,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9.8>

1. 교원 3명
2. 직원 2명
3. 조교 1명<신설 2020.9.8>
4. 학생 3명<개정 2020.9.8>
5. 동문 2명<개정 2020.9.8>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개정 2020.9.8>

② 평의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85조의8(평의원회 위촉) 평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칙 제82조의 교수회에서 추천된 자. 단, 교무위원은 제외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칙 제85조의2의 직원회에서 추천된 자. 단, 교무위원은 제외한다.
3.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조교회의에서 추천된 자<신설 2020.9.8>
4.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총학생회 및 각 학부 학생회에서 추천된 자<개정 2020.9.8>
5.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에서 추천된 자<개정 2020.9.8>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의원은 학부모,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건복지전문가, 교육전문가, 공무원,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기독교 목회자 중 총장이 추천하는 자<개정 2020.9.8>

제85조의9(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제85조의10(평의원회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20.9.8>

제85조의11(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대학 헌장의 제·개정, 제3호, 제6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이사추천에 관한 사항
6.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5조의12(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장의4 등록금심의위원회<신설 2020.9.8.>

제85조의13(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대학에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동문, 관련전문가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85조의14(위원회 구성)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되, 대학구성원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단위별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직원 4명
2. 학생 3명
3. 동문 1명
4. 외부 전문가 1명

제85조의15(기능)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의 등록금 심의에 관한 사항
2. 회계결산서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예·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제85조의16(운영규정) 위원회 운영을 위해 규정을 따로 정한다.

제17장 직 제

제86조(교직원의 구분) ① 우리 대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9.5, 2016.4.6>

② 우리 대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③ 우리대학교에 두는 교직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9.10.>

제87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②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③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업무를 보조한다.

제88조(직제) 우리 대학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제88조의2(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하여 본교에 예수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6.]

제89조(위원회) ① 우리 대학교는 원활한 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8장 부설기관

제90조(부속기관) ① 우리 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두고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2.17>

1. 도서관
2. 전자계산소
3. 신애학사
4. 저널편집국<개정 2004.3.16>
5. 방송국
6. 합창단
7. <삭제 2006.9.12>
8. 보건실<개정 2016.4.6>
9. 교수학습개발센터
10. 평생교육원<신설 2006.9.13>
11. 지역협력센터<신설 2011.9.9.><개정 2014.3.12., 2016.4.6., 2023.2.6>
12. T&L찬양단<신설 2014.3.12>
13. 인권센터<신설 2014.3.12.><개정 2022. 8. 29.>

14. 학생상담센터<신설 2014.3.12>
15. 장애학생지원센터<신설 2014.3.12>
16. 취·창업지원센터<신설 2014.3.12.><개정 2022.8.29.>
17. <신설 2014.3.12.><삭제 2022. 8. 29.>
18. <신설 2014.3.12.><개정 2016.9.28., 2017.2.17.><삭제 2022. 8. 29.>
19. <신설 2014.3.12><삭제 2016.4.6>
20. 심폐소생술교육센터<신설 2014.3.12>
21. 국제교류센터<신설 2015.7.7>
22. <신설 2015.7.7><삭제 2016.9.28>
23. 기초교양교육원<신설 2015.7.7>
24. 세움인성교육원<신설 2015.7.7>
25. 미래교육센터<신설 2016.4.6.><개정 2019.1.30., 2020.2.11., 2023.2.6.>
26. 통합실습센터<신설 2018.1.30.>
27. <신설 2019.1.30.><삭제 2020.2.11.>
28. <삭제 2019.7.18.>
29. 간호시뮬레이션센터<신설 2020.2.11.>

② 우리 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둔다.

1. 간호과학연구소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부속기관 및 연구기관의 조직,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삭제 2019.9.10.>

제90조의2(도서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교육기본시설로 도서관을 둔다.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두어 도서관 업무를 총괄한다.

② 도서관에 정보지원부와 정보운영부를 둔다.

③ 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따르고, 시설·직원·예산·자료의 기준·대학도서관발전계획 및 사무분장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9.10.]

제19장 학칙개정

제91조(학칙개정 절차) ① 이 학칙의 개정은 대학구성원의 의견이 있거나 교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장이 발의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10일 이상 예고하여 대학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 등에 의

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예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9.8>

② <삭제 2012.9.5.>

③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정안을 사전에 공고,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개정 2009.3.1>

제20장 자체평가 <신설 2011.9.9>

제92조(대학자체평가) ① 우리 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통한 대학 비전 실현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신설 2012.9.5.>

<삭제 2022.8.29.>

제93조(장애학생의 지원) <삭제 2022.8.29.>

부 칙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6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 제53조 별지(서식 제1호)의 증서는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및 5조는 201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2조2의 제1항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하기로 하다. (단, 편입생(4학년 편입생제외)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6조 제1항의 “강사”에 대한 규정 적용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는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간호학부는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주전공과정 125 학점과 부전공, 심화전공, 교직과정 중 1개 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포함하여 140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사회복지학부는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주전공과정 125학점과 심화전공 중 1개 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52조 제1항 제1호 간호학부, 2호 사회복지학부에서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1. 간호학부는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학부는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140학점 이상을,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12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2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37조 제4항의 개정 이전 2016학년도부터 2024학년도 편입생은 부전공 또는 심화 전공·나노디그리를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4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1 】 <개정 2018.11.28., 2019.9.10., 2020.2.11., 2023.2.6., 2024.9.5>

제 연도-일련번호 호

학 위 증 서

성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아래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전공 : _____ (학사)

부전공 : _____

나노디그리 : _____

마이크로디그리 : _____

년 월 일

예수대학교 총장

학위등록번호 : 예수대-연도-학-일련번호